

클럽메드 여행 보험 약관

이 클럽메드 보험약관은 클럽메드 여행하시는 분을 위해 마련된 클럽메드 여행 보험 약관에서 중요내용이 발췌된 약관입니다. 보험 청구시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행자 여러분께서는 여행 보험약관 책자를 자세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약관은 여행출발전, 항공권등과 함께 발송되며, 보다 자세한 상담이나 문의를 원하시는 분은 클럽메드 서울 사무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용어정의

- 1.1. "귀하, 귀하, 귀하자신"은 클럽메드의 등록된 회원들을 의미하며 회원과 동행하는 만 12세미만의 부양자녀도 이에 포함한다. 이러한 자녀들에 대한 보상 책임한도는 클럽메드 회원의 것과 동일하다.
- 1.4. "가족"은 같은 회원번호로 등록된 여행자의 배우자와 자녀를 의미한다.
- 1.6. "어린이"는 귀하와 동행하는 만 12세 미만의 여행자를 의미하며, 이러한 어린이에 대한 보상한도 책임한도는 여행자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 1.7. "상해"란 이 보험에서 보상하는 상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발생한 것으로 제1절과 제2절에 언급된 약관임과 동시에 여행도중여행자에게 발생한 것만을 의미하며, 기타병이나 질병으로 인한 상해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 1.9. "의료비"는 여행중에 여행자에게 발생한 상해, 사망 또는 병으로 인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블런스비용, 기타 긴급 후송비, 간호비 등의 경비와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진료자로부터 제공된 의료행위에 대한 경비, 그리고 위 상해로 인해 발생한 응급 치료 치료경비를 의미한다.

주의사항

2.5. 수화물(여행자 가방)과 개인 휴대품

- 2.5.1. 위 조항에 대한 최대 보상액은 한 품목당 US\$500로 제한되며, 현금 도난 시 최대 보상액은 US\$250로 제한되며, 카메라나 비디오 카메라는 그 최대 보상액(이에 부착된 모든 액세서리 포함)이 US\$1,500로 제한된다.
- 2.5.2.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한, 깨지기 쉬운 물품의 흠집이나 손상에 대한 보상은 제외된다.

2.7. 보험금 지급예외 규정

- 2.7.2.보험 약관이 발효되는 시점에서부터 여행자의 건강은 여행하기에 적합한 상태여야하며, 여행기간중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어떠한 상황으로부터도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여야한다. 그렇지않으면 이에 대한 보험 청구권은 상실할 수 있다.
- 2.7.3.제4절에 해당되는 분실이나 도난은 여행자가 사고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관내경찰서, 또는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사나 선박의 담당 사무소, 또는 클럽메드 발리지내의 해당기관에 반드시 신고 접수를 하여야하며, 이러한 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작성되어야만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험 청구권을 상실할 수 있다.
- 2.7.5.원자력의 붕괴 또는 방사성의 에너지원에 의해 발생하는 방사능으로 인한 손해 및 피해보상
- 2.7.6.여행자는 본인에 대한 상해나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일련의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 2.7.7.임신6개월 이후에 여행하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어떠한 손해에 대해서도 보상하지 않는다. (유산등)
- 2.7.8.보험사의 보상 책임이 적용되도록 하는 모든 종류의 의도적인 행위들

2.9. 선제 조건 규정

여행자 본인이나 친지 또는 그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동반자는 클럽메드에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에서 30일 이전까지 의사가 처방한 약, 진료행위, 상담을 받은 적이 없어야 보험청구 선제 조건 규정에 부합한다. 여행자 본인의 사망 그리고 이 보험규정에 정의된 친지의 사망시에는 보상상 이 30일 규정에서 제외된다.

2.10. 수수료

우리는 약관 제2절에 따라 각각의 보상청구의 첫 공제액 US\$50은 지불하지 않는다. 약관 제 3절과 4절에 따라 각 보상청구와 관련, 공제액은 US\$50과 신청금액의 15% 중 큰 금액으로 공제액은 지불하지 않는다. 또한 약관 제3절에 따라 보상청구와 관련하여 각 사고 당한 한 가족의 총 공제액은 US\$100과 신청금액의 15%중 큰 금액이고 이 공제액은 지불하지 않는다. 이에 반하여 제4절약관의 적용에 있어서 한 사고당 한 가족의 총 공제액은 US\$50과 신청금액의 15% 중 큰 금액이 공제되며, 이 금액은 지불하지 않는다.

2.11. 귀중품

클럽메드는 여행자의 귀중품은 가급적이면 집에 보관하고 여행중에는 소지하지 않을 것을 권장한다. 만일 리조트내에서 이러한 귀중품을 소지하였을 경우에는 이들을 클럽메드 여행 내의 귀중품 보관소에 보관할 것을 권장한다. 이러한 귀중품 분실시 보험청구는 이에대한 물품 구입 영수증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한다.

2.12. 어린이에 대한 보상한도 책임한도는 여행자의 것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2.13. 추가보험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은 여행자가 클럽메드 회원비를 지급함으로써 발효되는 기본 보험이며, 이는 클럽메드 여행 패키지에 포함된다. 이 클럽메드 여행자 보험은 클럽메드 휴양지를 오고가는 동안, 그리고 그 곳에서 머무는 동안 발생한 보험 사고에 대해 기본적인 보상만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므로, 만일 이에 추가로 보험가입을 별도로 설정하거나 클럽메드 휴양지 이외의 다른 지역을 동시에 여행하시는 분은 추가보험을 가입할 것을 권장한다.

여행 기간/ 보험시효시점

보험시효 개시가 클럽메드에 예약금을 지불하는 시점에서 시작되는 여행 예약 취소료 약관 규정을 제외하고는 여행기간 및 보험 시효 개시는 아래와 같은 시점에서 시작된다.

- 3.1.여행자가 클럽메드에서 제공한 모든 여행상품(기타관광 포함)을 구매한 후 일정에 따라 여행자의 거주지를 출발한 시점에서 시작되며 클럽메드 휴양지에서 다시 그 거주지까지 돌아오는 시점까지 적용된다. 단, 돌아올 때에는 반드시(항공기 여행객은 착륙후 즉시) 위 거주지로 곧바로 돌아와야 하며, 기타관광이 포함된 상품을 여행하는 여행객은 클럽메드 휴양지를 출발한 후 그 관광이 종료된 즉시 위 거주지로 돌아와야만한다.

제 1절 - 여행자 상해 약관 (최대 보상액: US\$ 12,000)

사망	US\$ 12,000
한쪽 또는 약쪽 눈의 영구적인 시력 상실	US\$ 12,000
한쪽 또는 그 이상의 사지 손실	US\$ 12,000

보상하는 손해

1. 여행자 사망 시에는 경찰서에 신고한 신고서와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여행자 상해시에는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사고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된후 발생한 사망또는 영구적인 후유장애

제 2절 - 의료비용 약관

제 2절 A항 - 해외에서 발생한 의료비용에 대한 약관

보상하는 손해 - 최대 보상 한도액 US\$ 7,800

1. 여행중에 여행자에게 발생한 상해 또는 병으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 수술비, 입원비, 앰블런스 비용, 기타 긴급 후송비, 간호비 등의 경비와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진료자로부터 제공된 의료행위에 대한 경비, 그리고 위 상해로 인한 발생한 응급 치료와 치료경비, 상해시 여행자가 본국으로 돌아온 후에도 지속적인 치료를 요할경우 사고일로부터 3개월 간에 발생한 상기 경비.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다른 보험회사로부터 보상 받은 금액. 단,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초과하는 보험 청구액은 제외
- b.만일 발생한 사고가 여행 기간중 발생한 사고가 아닌 동시에 또한 그 발생한 사고 장소가 거주지 일때 이에 부과된 진료비, 수술비, 병원비, 치료비용, 앰블런스 비용, 기타 긴급 후송비, 간호비등. 이러한 사고에 대한 보상이 있을 경우 역시 보험금 적용기간 3개월 규정이 적용된다. 만일 클럽메드 휴양지가 거주지 내에 위치할 경우 클럽메드에서 제공하지 않은 교통 수단을 이용해 휴양지로 오고가는 도중 발생한 사고로 인해 부과된 위와같은 경비 역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해당된다.
- c.상해나 질병과 관련한 최초 공제액 US\$50
- d.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2절 B항 - 거주지 내에서의 보상 약관

(이 약관은 클럽메드 측에서 거주지 외부로 여행객을 이동 시켰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상하는 손해

1. 클럽메드 휴양지 내에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진료자가 없거나 또는 여행자가 총지배인으로 부터 혹은 휴양지 내의 클럽메드 진료자로부터 외부 진료진의 진료를 의뢰할 경우, 이때 발생한 치료를 목적으로 지불된 정당한 사유의 교통비, 이 비용은 1회 방문시 US\$120까지 보상되며 총 교통비 보상액은 금액의 US\$390를 넘지 않는다.

2. 여행 기간중에 발생한 사고/질병으로 인해 그 발생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병원에 최초 입원시 그입원비의 보상액은 하루에 US\$200이다. (최고 한도 보상액 US\$2,300)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다른 보험회사로 부터 보상 받은 교통비. 단, 그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보상액을 초과하는 보험 청구액은 제외
- b.한가지 상해나 질병과 관련한 최초 공제액 US\$50
- c.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소해 및 피해

제 3절-여행예약 취소, 여행기간 단축및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 약관

보상하는 손해

1. 여행출발 전 예약취소나 여행기간 단축으로 발생한 취소료, 취소전 이미 지불된 환불 불가 예치금 또는 예약 취소나 여행기간 단축으로 인해 지불 해야 할 의무가 지워진 금액등이

또는

2. 여행자가 통제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예기치 못한 원인으로 여행 기간이 단축되었을 경우 이에 따른 여행 취소료, 이미 지불된 환불불가 예치금, 또는 여행자가 그와 동행한 18세 미만 어린이에게 발생한 추가 숙박/여행 경비등이

아래 항목에 해당 될 때

- 2.1 여행자 본인 그리고 그와 함께 여행에 동행한 친지, 회사의 사장/파트너등의 사망, 중상/중병, 또는 그로 인한 격리 수용, 배심원 활동등의 경우, 이중 상해 또는 질병에 해당되는 보험 청구는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진료자로부터 진단서를 보험 청구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 2.2 클럽메드 휴양지에서 여행자 또는 그와 동반한 자에 대해 면적이 이루어 졌을시 다시 업무를 재개할 수 없는 상황에서 휴양지 출발일이 면직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루어 질 경우 (최대 보상액 무제한)
- 2.3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내란, 화재, 홍수, 태풍, 산사태, 지진, 기타 자연재해로 인해 숙박시설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나 클럽메드 휴양시설의 폐쇄조치가 취해진 경우 (최대 보상액 무제한)
- 2.4 예기치 못한 파업(또는 노사분규), 소요, 내란, 화재, 홍수, 태풍, 산사태, 지진, 기타 자연재해로 인한 교통 노선의 변경, 또는 12시간을 초과하는 항공기 지연이나 그 항공기 지연이 3시간 이상12시간 미만일때 이러한 지연이 정당한 사유의 추가 숙박 경비나 이미 지불한 숙박 경비에 손해를 미칠 경우. 단,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 2.5 클럽메드 휴양지나 호텔에 예정된 도착 시간이 항공기 고장으로 인해 그보다 12시간 이상 지체되었거나 그 고장이 3시간 이상 12시간 미만일 때 이러한 지연이 정당한 사유의 추가 숙박 경비나 이미 지불한 숙박 경비에 손해를 미칠 경우(클럽메드 항공기가 아닌 다른 항공사 항공기의 지연은 해당 항공사로부터 지연 사유서를 제출 받아야 한다.) 단, 이러한 상황에서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2.6 항공기나 클럽메드에서 제공한 운송선의 납치로 여행일정이 12시간 이상 지체되었거나 3시간 이상 12시간 미만 지체 되었을 때 이러한 지체가 정당한 사유의 추가 숙박/여행 경비 혹은 이미 지불한 숙박경비에 대해 손해를 유발 시켰을 경우, 여행자를 목적지까지 제시간에 도착하게 하지 못한 이런 지체가 발생 했을 경우에는 여행자는 그 항공기 혹은 차량의 탑승자이어야 하며 이때 여행자는 여행을 계속 진행하기 위한 모든 정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최대 보상액 무제한)

2.7 클럽메드가 위치한 지역에서 갑작스러운 전염병의 발병으로 전염병이 그 지역의 정부 혹은 세계보건기구에 의해 공식적으로 선포되거나 또는 그 지역의 클럽메드 총지배인이 클럽메드 본사에 보고를 마친후 선포한 전염병으로 인해 발생한 여행예약 취소, 여행기간 단축 및 연장에 따른 추가비용이 발생한 경우. (최대 보상액 무제한)

추가 지급 규정

1. 여행자의 매장 비용및 그의 시신이나 유골을 본국으로 송환하는 비용, 또는 여행중에 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진료자로부터의 조연으로 여행자를 보조하고 수행하는데 함께한 여행자의 친지 혹은 그의 친구로 인해 발생한 정당한 비용 (최대 보상액 US\$3,000)
2. 여행중 여권, 여행 서류, 금품 유실로 인해 여행기간에 지장이나 지체를 초래 했을시 발생한 정당한 사유의 추가 혹은 손해를 입은 숙박/여행경비 (최대 보상액 US\$1,000)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 항공기 지연시 해당 항공사에서 지급한 비용
- b. 여행자, 동반자 또는 그의 친지의 사업상의 손실 또는 계약상의 의무로 유발된 손실
- c. 여행자, 동반자 또는 여행을 함께하는 친지의 여행계획 변경이나 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도를 포기함으로 발생된 손해액
- d. 여행사가 여행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최소인원을 모집하지 못한 경우로 발생된 손해액
- e. 우울증, 불안, 정신이상 또는 신경장애
- f. 여행자가 애초 예약했던 호텔등급이나 항공좌석을 그 보다 상향 조정해서 발생한 추가 경비, 단, 여행자가 이러한 경비를 본인의 통제상황에서 벗어나 필수 불가결하게 발생된 것을 입증할 경우, 이런 경비는 보상이 가능하다.
- g.1인당 공제액: US\$50 혹은 보험 신청 금액의 15%중에서 큰 금액이 공제된다. 그러나, 보상청구가 같은 사고 안에서 가족에 의해 발생되면, 보상 청구 공제액은 각 가족(한 가족)당 총US\$100혹은 보험 신청금액의 15% 중에서 큰 금액이 공제 된다
- h. 클럽메드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여행일정 중 발생된 추가 여행 경비 혹은 여행 경비 손해액
- i. 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4절 - 수하물(여행용 가방), 개인 휴대품, 현금과 서류 약관

보상하는 손해

여행중에 소지한 개인 휴대품(가구 제외)에 대한 도난이나 손상(최대한도 US\$2,000) 그리고 여행중에 구매한 물품에 대한 도난이나 손상, 피해에 대한 보상은 수선, 물품대치, 또는 현금 보상중 하나로 선택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나 그 보상에 있어서의 실제 보상액은 감가상각비용을 제외한 액수가 된다. 실제 보상액은 실 구매액을 초과하지 않거나 세관 신고 금액을 초과하지 않으며, 이는

1. 비디오 카메라나 카메라(이에 부착되는 모든 액세서리 포함)일 경우 그 최고한도 보상액은 US\$1,500
2. 단일 품목, 한 세트 또는 한 쌍에 대한 최고 보상액은 US\$500이다
3. 만일 여행자의 수하물이 운송중의 과실로 24시간 이상 지연하여 도착되는 경우 이를 위한 비상 구매 비용으로 최고 US\$300까지 보상한다(공제액을 공제하지 않음). 이러한 청구는 해당 항공사의 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
4. 여행중 도난당한 현금, 여행자 수표, 항공권, 도난 여권/신용카드 갱신료(신용카드 분실 후 도난 결제 금액은 US\$80까지 보상한다) (**최대 보상액은 US\$250**)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클럽메드 휴양지로 오고 가는 도중 클럽메드에서 제공하지 아니한 운송수단을 이용했을 때 발생한 손해
- b.전기장치 또는 기계장치의 고장
- c.여행자가 탑승한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기차에 화재나 사고 또는 도난 사건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이유로 깨지기 쉬운 물품이 금이 가거나 깨진 경우(그러나, 안경의 렌즈, 망원경, 사진기기, 전자기기 제품은 제외)
- d.환경이나 기후 조건, 곤충, 바퀴벌레, 해충 또는 세척, 수선, 복원, 대체 과정 등에 따른 마모나 질 저하, 손실
- e.사고 발생 직후 24시간 이내에 관내 경찰서, 또는 여행자가 탑승한 항공사나 선박의 담당 사무소, 또는 클럽메드 리조트 내의 해당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도난이나 분실. 이러한 신고는 모두 서면으로 증명 되어야 한다.
- f.여행자가 탑승하고 있지 않거나 지정된 운송 수단이 아니거나 또는 운송수단의 탑승과 관련이 없는 곳에서 여행자가 직접 운반/보관하지 아니한 수하물과 개인 휴대품
- g.신용카드, 여행자 수표, 여행 서류 분실시 그 발생기관과 e항목에 열거된 해당 기관에 즉시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 h.세관 또는 다른 공공기관에 압수된 물품 또는 통화의 평가 절하로 인한 손해액
- i.판매나 거래를 목적으로 들여온 상품이나 개인 물품
- j.1인당 공제액: US\$50 혹은 보험 신청 금액의 15%중에서 큰 금액이 공제된다.
- k.한 국가의 위법행위나 규정 위반으로 운반해 온 물품/개인 휴대품에 대한 분실이나 손실
- l.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 및 피해

제 5 절 - 배상 책임 보상 약관

보상 하는 손해

여행 기간중 여행자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배상 책임에 대한 최대 보상 한도액은 US\$200,000 이며, 이에대한 보상은 아래 항목에 한해 제한된다

- 1.제 3 자에게끼친 신체상의 상해로 그 상해가 그에대한 사망과 질병에 연관될때
 - 2.제 3 자에게 끼친 재물에 대한 손상이나 손실
- 배상 책임에 있어서 소송과 관련된 비용에 대한 보상은 별도로 지급되지 아니하며 총 보상금액에 포함되어 일괄 지급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
- 경비이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소송 경비가 우리의 보험과 관계없이 다른 형태로 여행자에게 보상된 경우도 위에 해당된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친지, 여행 동반자, 상관에 대한 신체적 상해나 사망 또는 여행자가 노동자 보호법이나 법규 혹은 다른 법률상 조항에 적용을 받는 경우
- b.여행자가 소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재물에 대한 손상
- c.배상 책임에 대한 피해가 동력을 이용해 움직이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 등이 원인이 되어 재물에 손해를 입히거나, 신체에 대한 상해, 사망으로 이어진 경우. 단, 이러한 자동차, 항공기, 선박은 그 당시 소유권, 소지권, 혹은 사용권한이 여행자에게 귀속된 상태이어야 한다.
- d.여행자의 사업상, 전문적인 활동 또는 직업상의 활동 또는 직업상의 활동 등이 원인이 된 피해
- e.형법상 혹은 각종 처벌법상 책임이 있는 피해
- f.보상 예외 약관에 언급된 모든 조항과 관련한 모든 손해및 피해

제 6 절 - 야블리 리조트의 스키사고 구난 비용

보상하는 손해

야블리에서 발생한 스키 사고와 관련한 구난 비용 한금(최대 보상액은 US\$150)

보상하지 않는 손해

- a.경기 참가로 인한 사고나, 리조트나 당국의 지침을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
- b.유자력강사를 동반하지 않고 활강코스에서 스키나 스노보드를 타다가 발생한 사고
- c.기타 예외 조항에 해당되는 사고

보상 예외 약관

아래 항목이 직/간접적으로 원인이 된 불실이나 손해에 대한 보험 청구는 본 약관에 의거 그 보상이 이루어 지지 않는다.

- d.정부의 금지나 규제로 인한 피해
- f.여행자가 본인에 대한 상해나 물품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거나 예방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피해
- j.임신 6개월 이후에 여행하는 경우, 임신이나 출산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해 및 피해(유산 등)
- k.자살, 자살 기도 또는 의도적인 자해로 인한 피해
- l.여행자 본인이나 친지 또는 그와 함께 여행하는 모든 동반자가 클럽메드에 예약금을 지불한 시점에서 30일 이전까지 의사가 처방한 약, 진료행위, 상담을 받은 적이 있는 건강 상태로 발생된 피해는 보험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여행기간중 여행자 본인의 사망 그리고 이 보험규정에 정의된 친지의 사망시에는 이 보상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m.합법적으로 인가를 받은 진료자로부터 처방되지 아니한 알콜 혹은 약물의 사용으로 인한 피해.
- p.여행자가 아래의 활동을 목적으로 여행을 주도해서 생긴 피해:
p.(ii)여행자가 여행중 행글라이딩, 번지점프, 패러슈팅, 패러세일링과 같은 영공을 이용한 스포츠 활동(이와 같은 스포츠 활동은 이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됨)에 참여 하였거나 사냥, 플로경기, 축구 또는 로프를 이용하거나 가이드가 동반된 암벽타기나 등반, 수상스키 등에 참여. 단, 여행자가 클럽메드 휴양지내에서 투숙하는 동안 클럽메드에서 승인하고, 제공한 활동에 대해서는 이 제외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 w.전통 한의학 처방으로 발생하는 의료비용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을 신청하기 전 귀하가 청구하는 내용이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귀하의 여행 예약 청구서 및 본 약관의 관련 조항을 확인하여야한다. 보험금 청구양식은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에 비치되어 있으며, 이 양식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명시된 관련 서류와 함께 클럽메드 코리아 본사로 제출되어야 하며,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내 마쉬(Marsh S.A. 싱가포르 소재)에 접수되어야한다. **구비서류의 미 제출은 여행자의 보험금 청구를 지연시키거나, 거부가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

사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보험금 청구양식 미제출시, 여행자의 보험금 청구가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다.